제 안 설 명

○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(개진·우곡 119 지역대 증축)

고 령 군
(군민안전과)

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.

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, 그리고 여러 의원님
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
깊은 감사를 드리면서,

개진·우곡 119지역대 증축을 위한 「**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**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주요 내용은,

개진·우곡 119 지역대 훈련용 보관 창고 설치 등 증축을 통한 훈련환경 개선 및 신속동료구조팀(RIT)훈련시설에 비가림막 설치로 오염 및 균열방지를 위하여, 군유지인 개진면 직리 664번지, 개진·우곡 119 지역대 증축에 대한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.

그간 추진상황을 살펴보면,

금년 5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, 6월 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협의 예정입니다.

앞으로

고령소방서에서 사업비를 확보하여 7월 착공 및 9월 준공하게 됩니다.

이상 말씀드린 「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2025년 06월 일

군민안전과장 홍 영 복

의안번호	제 호
의 결 연 월 일	2025. 6 . . (제 회)

의결사항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(개진·우곡 119 지역대 증축)

제 출 자	고령군수 (군민안전과장)
연 월 일	2025. 6 . .

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

(개진・우곡 119 지역대 증축)

의 안 번 호	

제안일자 : 2025. 6. .
제 안 자 : 고 령 군 수

1. 제 안 사 유

개진·우곡 119 지역대 훈련용 보관 창고 설치 등 증축을 통한 훈련환경 개선 및 신속동료구조팀(RIT) 훈련시설에 비가림막 설치로 오염 및 균열방지를 위하여 개진·우곡 119 지역대 증축을 위한 '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(안)' 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근 거 법 령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제9조 제1항에 의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영구시설물 축조는 군의회의 동의 대상임.

3. 주 요 내 용

○ 위 치 : 고령군 개진면 직리 664번지 외 2필지
○ 부지면적 : 3,187㎡
○ 소 유 자 : 고령군
○ 사용내역 : 공공청사(개진・우곡 119 지역대)

4. 추진현황 및 계획

❍ 2025. 05. : 설계용역 착수

❍ 2025. 06. : 영구시설물 축조(증축) 건 고령군의회 동의 요청

❍ 2025. 06. : 설계용역 완료 및 건축협의

❍ 2025. 07. : 공사 착공

❍ 2025. 09. : 공사 준공

붙 임 1. 위치도 및 지적도 1부

2. 평면계획(안) 및 현재사진 1부

3. 관련 법령 1부.

【 붙임 1 】

위 치 도

시례골
적동교회
직리
개진일반
산업단지
소이빈네이처
제2공장
독산
(129.2m)
개진119
지역대
개경포로
따막골
신안마을회관
직리마을회관
미륵정사
송천골
S-oil
주유소
열미골
반운교류센터
검안골
150m

지 적 도

658 답
658-1 답
659 답
659-1 답
660 답
660-1 답
760 천
663-4 답
663-1 창
663 잡
663-7 답
664 대
665 답
666 답
666-1 답
667 답
667-1 답
668 답
669 답
762 도
824 구

【 붙임 2 】

평면 계획(안)

현재 사진

[붙임 2] 관련법령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3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. **다만,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**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9조(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)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영구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2. 삭제
3.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. 이 경우 철거비용의 예치는 영구시설물의 착공 전에 하여야 한다.
4. 삭제
5. 제29조제1항제13호·제23호에 해당하여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자 또는 같은 항 제1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해당 대부기간이 끝났을 때 그 대부받은 재산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
6.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축조하는 경우
7. 매각·양여·교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그 사용을 승낙받아 축조하는 경우. 다만, 대금을 나누어 내는 매각 또는 교환의 경우에는 그 매각 또는 교환 대금의 2분의 1 이상을 낸 경우로 한정한다.
8. 일반재산을 신탁 또는 위탁하여 개발하는 경우
9. 지방자치단체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공유재산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(空中)·지상·지하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
10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, 생활체육시설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11. **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**(이하 "공용재산"이라 한다) **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**(이하 "공공용재산"이라 한다)**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**

② 법 제13조 단서 및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또는 원상회복 등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고령군 군민안전과	
연 락 처	(054) 950 - 6442